

경 영 공 시

본 농(축)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아 래

1. 공시사유 : 농업협동조합법 제145조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5호)

2. 공시내용

- 대 상 : 영업지원직(경제) 김홍순외 8명
- 경 위 : - 영업지원직 급여(시간급 임금) 부당 수령
- 휴무대체 근무자(아르바이트)의 비정상적인 급여(임금) 수령
- 주요내용 : 영업지원직(경제) 김○○ 견책, 영업지원직(경제) 손○○ 견책, 영업지원직(경제) 조○○(퇴직자) 주의촉구, 과장대리 이○○ 주의촉구, 팀장 심○○(전출자) 주의촉구, 차장 김○○(퇴직자) 주의촉구, 상무 이○○ 주의촉구, 전무직 무대리 성○○ 주의촉구, 상무 오○○(퇴직자) 주의촉구
-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없음.

2018년 7월 13일

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장 (직인)

